의안번호	2203838
의 뢰 인	장경태의원
회 답 일	2024. 9. 19.
추계번호	24C3766

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

【비용추계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비용추계 결과

❑ 제정안에 따라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에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633억 3,500만원, 2030년 652억 5,1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3,216억 9,100만원(연평균 643억 3,8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양육비 대지급 신청 (안 제5조)	63,333	63,881	64,382	64,836	65,249	321,681	64,336
양육비대지급결정위원회 (안 제6조)	2	2	2	2	2	10	2
합계	63,335	63,883	64,384	64,838	65,251	321,691	64,338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(양육비 대지급 신청)	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(이하 "이행관리원"이라 한다)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(이하 "양육비 대지급"이라 한다)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 양육비 대지급 신청은 미성년 자녀가 「민법」 상 성년에 이를 때까지 할 수 있음 양육비 대지급 신청의 대상, 금액, 지급시기 등 지원 기준은 양육비대지급결정위원회의 심의・의결을 거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	
2	안 제6조(양육비대지급결정위원회)	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양육비대지급결정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두도록 함 위원회는 양육비 대지급 여부 및 양육비 대지급 금액의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·의결하고,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이행관리원의 장이 됨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5조(양육비 대지급 신청)	○	
2	안 제6조(양육비대지급결정위원회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❑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양육비 대지급이 필요한 양육비 채권자 전원에게 양육비를 대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함

○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대지급 신청 여부 및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양육비 대지급 결정 여부 등을 현 상황에서 예측할 수 없으므로 양육비 대지급이 필요한 양육비 채권자 전원을 양육비 대지급 대상으로 가정함

❑ 양육비 대지급 건수는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및 여성가족부의 「2021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」 결과를 참고하여 추정함

❑ 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법률안 심사기간과 시행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양육비 대지급 신청(안 제5조)

❑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추가재정소요는 양육비 대지급에 필요한 비용에서 현재 실시 중인 '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사업' 예산을 차감하여 산출함

❑ 양육비 대지급 비용은 양육비 대지급 건수를 추산한 후 양육비 대지급 금액을 곱하여 산출함

○ 먼저, 통계청 장래가구추계(2026~2030년)의 추계가구 수에 최근 5년간(2018~2022년) 평균 미성년 자녀 한부모가구 비율 1.76%를 적용하여 장래 미성년 자녀 한부모가구 수(2026~2030년)를 추정

-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른 총 가구 수 대비 미성년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구 수의 2018~2022년 평균 비중은 1.76%임

○ 다음으로 여성가족부의 「2021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」 결과를 참고하여 양육비 채권 발생가능 비율, 양육비 채권 보유비율 등을 적용

- 양육비 채권이 발생하지 않는 사별 등을 제외하고, 양육비 채권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인 이혼·미혼 한부모가족 비율인 88.4%를 적용함
- 이혼·미혼 한부모가족 중 양육비 채권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인 21.3%를 적용함 (정기지급 채권 19.9% + 일시·정기지급 채권 0.3% + 일시지급 채권 1.1%)
- 양육비 채권 소유자에 대한 양육비 채무 미지급률인 25.9%를 적용하고, 양육비 대지급 건수는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한 평균 자녀 수인 1.4명을 적용하여 산출함
- 양육비 대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한부모가구의 자녀는 해당연도 내에서는 미성년으로 가정함

[표 2] 양육비 대지급 건수 산출 내역

(단위: 가구, 건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
장래추계가구 수(A)	22,516,347	22,705,521	22,879,575	23,037,240	23,180,129
미성년자녀 한부모가구 수(B) (B=A×1.76%)	396,288	399,617	402,681	405,455	407,970
이혼·미혼 한부모가구 수(C) (C=B×88.4%)	350,318	353,262	355,970	358,423	360,646
양육비 채권소유 가구 수(D) (D=C×21.3%)	74,618	75,245	75,822	76,344	76,818
양육비 채무 미지급 가구 수(E) (E=D×25.9%)	19,326	19,488	19,638	19,773	19,896
양육비 대지급 건수(F) (F=E×1.4명)	27,056	27,284	27,493	27,682	27,854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○ 양육비 대지급 금액은 현행 '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사업'의 월 지급단가인 20만원으로 가정하고, 12개월을 곱하여 연간 양육비 대지급 금액을 산출함[1)]

- 양육비 대지급 대상자의 양육비 채권 금액은 월 20만원 이상으로 가정함

1) 정부가 2024년 3월 발표한 「한부모가족 양육비 대지급제 추진 방안」에서도 양육비 대지급 월 지급단가를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음

[표 3] 양육비 대지급에 따른 비용: 2026~2030년

(단위: 건, 백만원, 개월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
양육비 대지급 건수(A)	27,056	27,284	27,493	27,682	27,854
양육비 대지급 금액(B)	0.2	0.2	0.2	0.2	0.2
지원 개월(C)	12	12	12	12	12
합계(A×B×C)	64,934	65,482	65,983	66,437	66,85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❑ 현재 실시 중인 '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사업' 예산은 2024년 연간 사업비 16억 100만원이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

○ 여성가족부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사업 예산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6억 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

❑ 양육비 대지급에 필요한 비용에서 현재 실시 중인 '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사업' 예산을 차감하여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함

[표 4]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
양육비 대지급 비용(A)	64,934	65,482	65,983	66,437	66,850
실시 중인 사업 예산(B)	1,601	1,601	1,601	1,601	1,601
계(A−B)	63,333	63,881	64,382	64,836	65,249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❑ 참고로, 개정안은 양육비를 대지급한 경우 그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, 현재 실시 중인 '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사업'의 양육비 누적 회수율은 2023년말 기준 15.36%임

○ 대지급한 양육비를 회수하는 경우 재정수입 증가로 인해 정부의 실제 재정부담액은 추계액보다 감소할 수 있으나,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[2]에 따라 수입과 지출은 상계하지 않음

[표 5]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사업 양육비 회수율

(단위: %)

구분	2019	2020	2021	2022	2023
양육비 회수율(누적)	1.09	5.05	9.29	12.72	15.36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양육비대지급결정위원회(안 제6조)

❑ 제정안에서는 양육비대지급결정위원회 조직・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행 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[3]에 따른 '양육비이행심의의원회'를 유사사례로 참고하여 추계함

○ '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'는 양육비 이행확보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,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4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됨

○ 본 추계에서는 유사사례와 동일하게 위원회에 민간위원이 5명 위촉되는 것으로 하고, 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회의 참석수당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연 4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함

○ 위원회 구성・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매년 200만원(5명×10만원×4회)이 될 것으로 예상됨

---

2) **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5조(비용추계의 방법 등)** ②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재정지출 또는 재정수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이를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.

3) **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(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)**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・의결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1.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의 신설 및 개선에 관한 사항
2.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
3.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
4. 양육비 가이드라인의 마련에 관한 사항
5.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양육비 이행확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차관이 된다.
③ ~ ⑤ (생 략)

[표 6] 양육비대지급결정위원회 구성·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
양육비대지급결정위원회 (안 제7조)	2	2	2	2	2	1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Ⅳ. 부대의견

❑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양육비 대지급이 필요한 양육비 채권자 전원에게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대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하고, 여성가족부의 「2021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」 결과를 참고하여 대지급 대상자를 추정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양육비 대지급 신청자 및 선정자 수, 양육비 대지급 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
❑ 대지급한 양육비를 회수하는 경우 재정수입 증가로 인해 정부의 실제 재정부담액은 추계액보다 감소할 수 있음

Ⅴ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이제정	이진우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제정	02-6788-3739	jejeong2@na.go.kr